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육미선 의원 등 7명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18년 11월 21일
- 회부일자 : 2018년 11월 22일

3. 제안사유

- 상위법령인 「성별영향평가법」 개정에 따른 용어 개정 및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성별영향평가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령인 「성별영향평가법」 개정에 따른 제명 및 용어 변경
 - (현행) “성별영향분석평가” → (개정) “성별영향평가”
- 나. 「성별영향평가법」 제10조2제3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신설 (안 제8조)
 - 특정성별영향평가 시행 및 결과의 정책 반영 관련 규정 등
- 다. 성별영향평가위원회 확대 구성 (안 제11조)
 - 위원 수 : (현행) “15명 이내” → (개정) “20명 이내”
 - 당연직 위원 : (현행) “기획관리실장, 여성정책관”
→ (개정) “기획관리실장, 여성정책관을 포함한 경제·복지 등의
업무 담당 실·국장 중 5명 이내”
- 라. 성별영향평가의 정책반영을 통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자 포상 조항 신설 (안 제17조)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최영지)

가. 제출배경

- 본 조례안은 「성별영향평가법」 개정에 따른 용어 개정 및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, 성별영향평가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도 차원의 필요한 조항을 신설, 개정하고자 육미선 의원 등 7명이 11월21일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기존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이 「성별영향평가법」으로 개정(2018. 3.27.) 되면서, 용어 중 “성별영향분석평가”가 “성별영향평가”로 변경됨.
 - 이에 따라 조례 제명, 조 제목 및 조항들에 사용된 “성별영향분석평가”를 “성별영향평가”로 변경하였음. 이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타당함.
- 안 제5조는, 「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」 제2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기준으로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에 문제는 없음.

□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

제2조(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「성별영향평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(이하 “대상 정책”이라 한다)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. 다만,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.

1.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·개정을 추진하는 법령(법률·대통령령·총리령·부령 및 조례·규칙을 말한다)
2.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(週期)로 수립하는 계획
3.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
4. 「지방재정법」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

- 안 제8조는 「성별영향평가법」 제10조의2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따라 도지사가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, 평가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함.

□ 성별영향평가법

제10조의2(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1. 시행 중인 조례·규칙
2.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
3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
4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, 매년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- 안 제11조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인원 및 당연직 위원을 확대하여 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한 것으로,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필요한 조치로 사료되며, 상위 법령에도 이에 대한 제한 조항이 없는 바,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음.

- 위원 수 : (현행) “15명 이내” → (개정) “20명 이내”

- 당연직 위원 : (현행) “기획관리실장, 여성정책관”

- (개정) “기획관리실장, 여성정책관을 포함한 경제·복지 등의 업무 담당 실·국장 중 5명 이내”

- 다만,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실효성 도모를 위해서는 위원회 세부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시행규칙이 제대로 작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- 안 제12조는 「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」 제12조에 따라 성별영향책임관 및 실무 담당자(성별영향평가 추진 관련 부서의 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의 직원)를 지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타당함.

- 안 제17조는 성별영향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, 해당 정책에 기여한 자에게 「충청북도 포상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, 이는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일반 도민 및 공무원의 관심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사료됨.

다. 종합의견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성별영향평가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일부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고,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명시,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확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, 내용 및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, 입법예고 및 해당 집행부와의 협의를 거친 바 절차상으로도 타당함.